2024. 2월 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 홍보사항 》	《 주관부처 》
○ 병영생활 고충, 성폭력·군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비리, 병영안전 신고/상담「국방헬프콜 1303」	/ 국방부
○ 국민과 함께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 국방부
○ 2024년 육군 안전모니터링단 모집	/ 국방부
○ 우리 주변에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 행정안전부
○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행정안전부
○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자연재난 행동요령 홍보	/ 행정안전부
○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부터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월 제철 농산물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 농림축산식품부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규 참여농가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 PLS 시작, 안전은 더 플러스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관리수칙	/ 농림축산식품부
○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지원 해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 보건복지부
○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
○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 보건복지부
○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이용해 보세요!	/ 국토교통부

《 홍보사항 》	《 주관부처 》
○ 2월 이달의 수산물	/ 해양수산부
○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해양수산부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금지	/ 해양수산부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대상 전면 확대	/ 해양수산부
○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원 지원	/ 해양수산부
○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해양수산부
○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국민권익위원회
○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 통계청
○ 청소년 도박 근절 및 상담 안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홍보	/ 산림청
○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입학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세요!	/ 질병관리청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새학기 시작 전 챙기세요!	/ 질병관리청
○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 질병관리청
○ 해외여행 시 뎅기열 조심하세요!	/ 질병관리청
○ 설 명절 코로나19 접종 포스터	/ 질병관리청
○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 안내문	/ 질병관리청
○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기간 1년 연장 의결	/ 진실화해위원회
○ 진실화해위원회,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안내	/ 진실화해위원회

병영생활 고충, 성폭력 · 군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비리, 병영안전 신고 / 상담 「국방헬프콜 ☎130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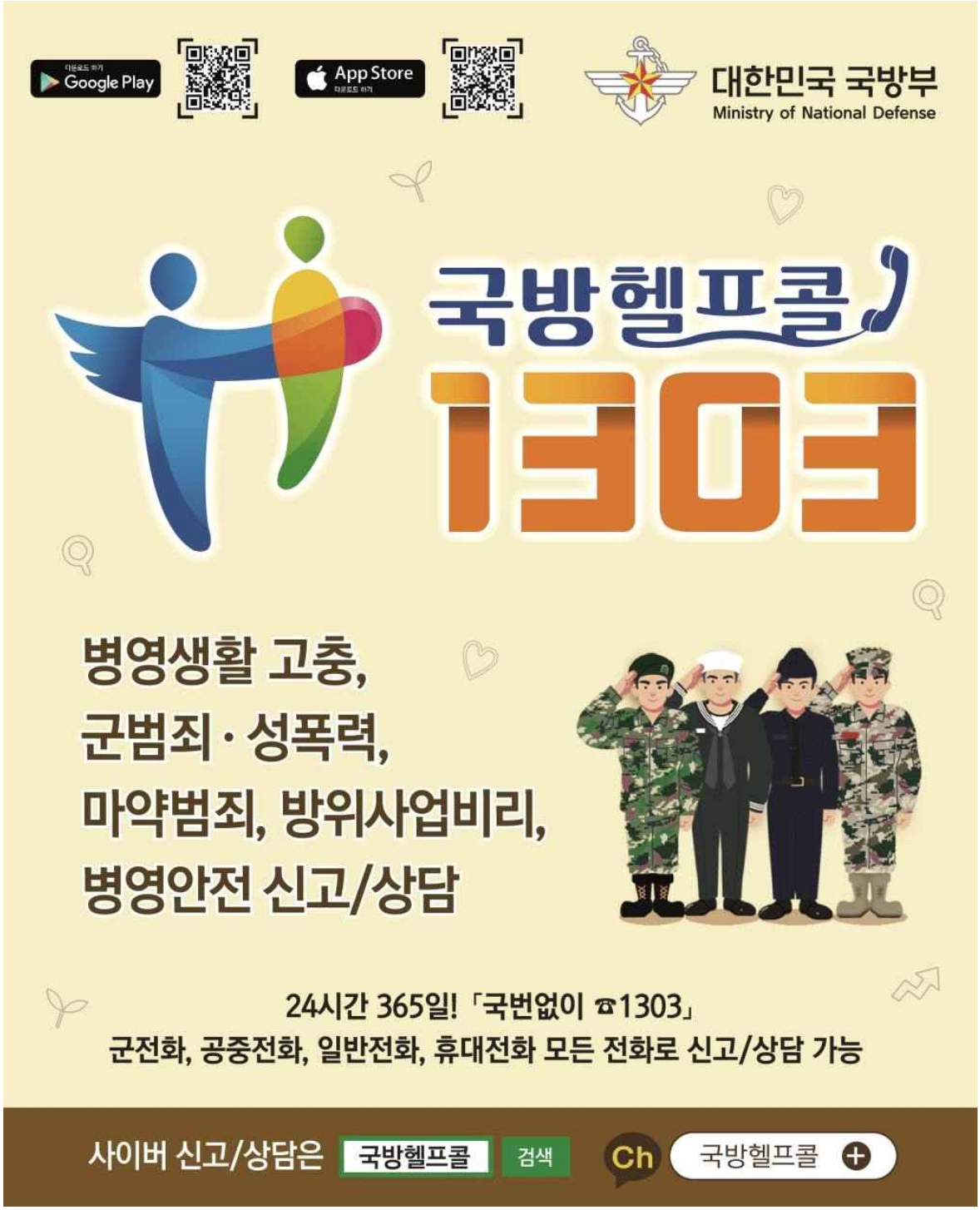

목록보기

국민과 함께하는 6 · 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02-811-6526)

목록보기

2024년 육군 안전모니터링단 모집

(자료제공: 육군전투준비안전단 ☎ 042-550-1319)

목록보기

우리 주변에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자료제공: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4110)

희망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숨은 희망을 찾아 함께 공유할수록 대한민국은 따뜻해집니다.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찾아주세요.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이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 **인명구조**와 **환경보호**에 앞장서시는 분, 주변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분** 등 각 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 추천대상이 됩니다.

■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본인 및 단체 등 자체 추천은 불가능

■ 추천하시려면, 인터넷, 이메일로 추천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스마트폰(m.sanghun.go.kr)으로도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고,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www.sanghun.go.kr** / 이메일 : **sanghun114@korea.kr**
- 모바일(스마트폰) : **m.sanghun.go.kr**
- 우편 또는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추천은 연중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 추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추천된 분들 가운데 **정부포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연말에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록보기

2024년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정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행복과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추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 **나눔을 실천한 분** : 사회봉사, 재산・재능 기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안전에 기여한 분** : 인명구조 및 타인의 재산보호, 생활안전, 환경보호 등
- **희망을 전한 분** : 역경 극복, 국제 구호, 가족애 또는 통합(화합) 실천 등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독립운동.보훈.참전,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

☞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연중 언제든 추천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포상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추천된 접수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인터넷,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시거나,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여 추천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 접속 → '**국민추천포상**' - '**추천하기**' - '**인터넷 추천**' 메뉴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 네이버・다음・네이트 검색창에「국민추천포상」을 입력하면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바로가기 접속 가능

② (**모바일**) **모바일 접수창구**(m.sanghun.go.kr) 접속 → '**모바일 추천**'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③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 국민추천포상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에서 추천서식 다운로드

④ (**우편·방문**) 행정안전부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제출**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추천서식과 필요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사실 확인 ⇨ 요건확인 ⇨ 공적심사 ⇨ 포상결정 ⇨ 포상수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2024년 12월 포상할 예정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4110, 4096)

목록보기

우리 주변에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 주세요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4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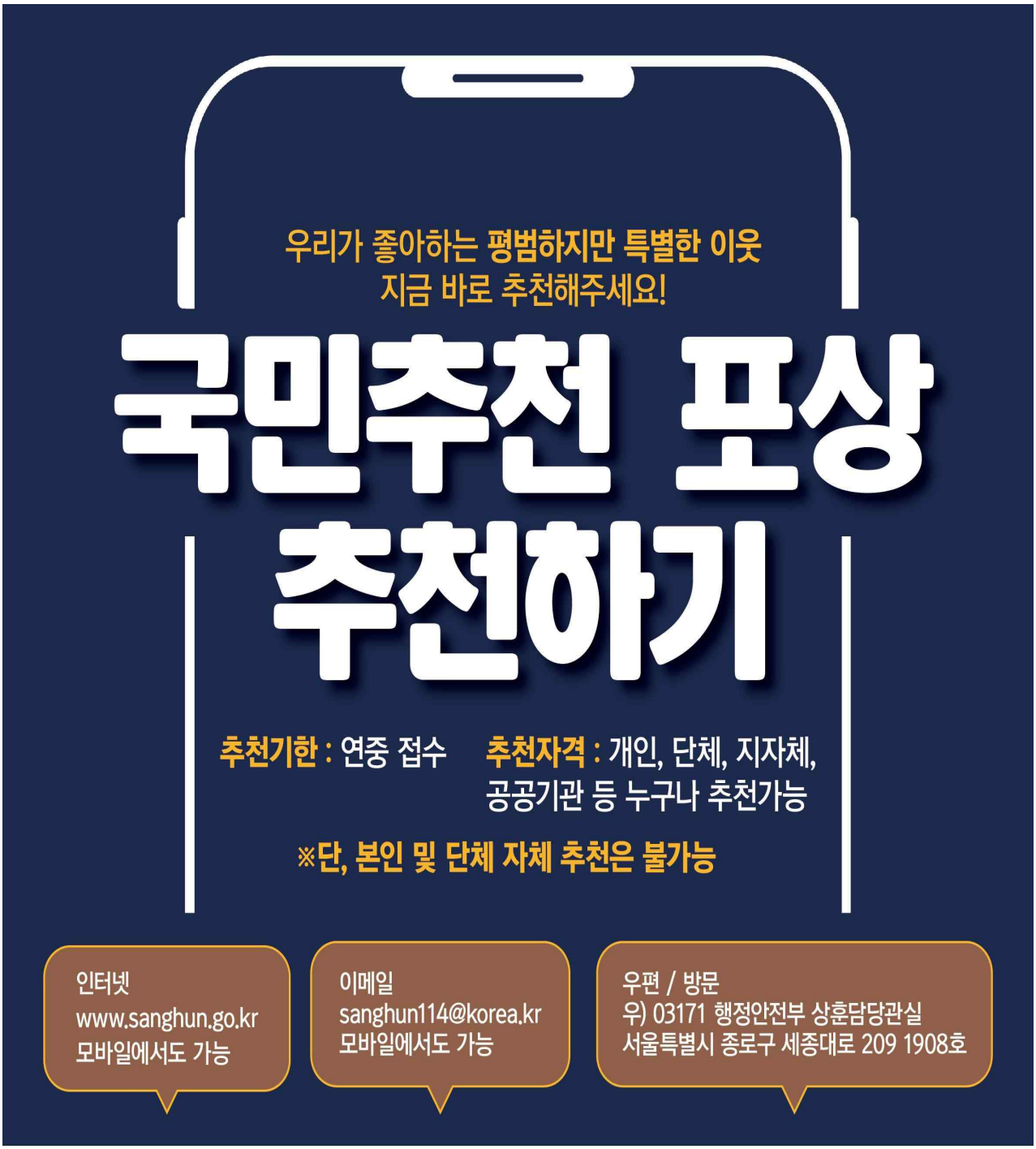

궁금하신 점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로 문의주세요. 02)2100-4110, 4096

목록보기

【서식1】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ex) 지인, 가족
	주 소*			
	전화번호*		e-mail	
	접수 계기 : ☐ 공공기관·지자체 ☐ 대중교통 ☐ 전광판 ☐ 1365, VMS ☐ 방송 ☐ 신문·잡지 ☐ SNS ☐ 기타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업)	
	주요경력 (기간)	. (~) . (~) 현 (~)		
공적내용*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추천 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피추천인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기관의 공적사실 확인이 있을 때 제출하여 주시면 공적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목록보기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 ☎ 044-205-6173)

목록보기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 오는 **3월 1일은 제105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가정에서는 **3. 1.(금)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 24시간 게양 가능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목록보기

겨울철 자연재난 행동요령 홍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 044-205-1050)

목록보기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 ☎ 044-205-6334)

목록보기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홍보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044-203-2960)

목록보기

2024년부터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 54-429-4193)

2024년부터

2023. 12.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4. 2. 11.)

내년부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 제4조제2항)

—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해소되었습니다.

* 등록 기준 :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업소득 등

증빙 자료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확인이 강화됩니다. (법 제5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정보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농사실확인서, 농지재구매증명서 등,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판매증명서 등 등

— 농업인은 농지·축사 등지 소재지 이장·통장 등에게 실경작을 증명하는 '영농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증빙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등록신청을 거절하거나 기 등록된 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의 관리·확인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법 제33조의2, 제6조제1항)

— 농업경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 농업경영정보 직권정정 또는 말소사유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또는 말소 기준>

구분	정정 또는 말소 사유	비고
현행 규정	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등록(변경)한 경우	말소
	② 농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③ 주소, 소재지, 품목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
신설 규정	①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말소
	②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인 경우	
	③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⑤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위반하여 명급을 선구한 자의 해당 농지 경영정보 등록한 경우	
	⑥ 관련 증빙 자료 제출(30일 내)을 거부하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

거짓·부정등록으로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법 제6조의2제4항)

거짓·부정등록 시 및 증빙 자료 거짓 확인 중앙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법 제33조의2, 제15조)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 서류를 확인·증명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록보기

2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목록보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3)

목록보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규 참여농가 모집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044-201-2633)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규 참여 농가 모집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 지급

논물관리

- 중간 물떼기 시행농가 → **ha당 15만 원**
-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행농가 → **ha당 16만 원**

기대효과 논에 산소를 공급해 **메탄 발생 감소**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 **ha당 36.4만 원**

기대효과 대기 중의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농경지에 고정

지원대상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고,
  소속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신청·선발

- 농업인 단체 대표가 단체·법인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과에 신청
  (신청기간: 2024.1.22~2.23)
-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

예시 50ha 경작하는 단체

2명, 각 25ha 경작 < 50명, 각 1ha 경작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또는 유튜브 '농리와 티비(TV)'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축산물 PLS 시작, 안전은 더 플러스 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8)

목록보기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관리수칙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2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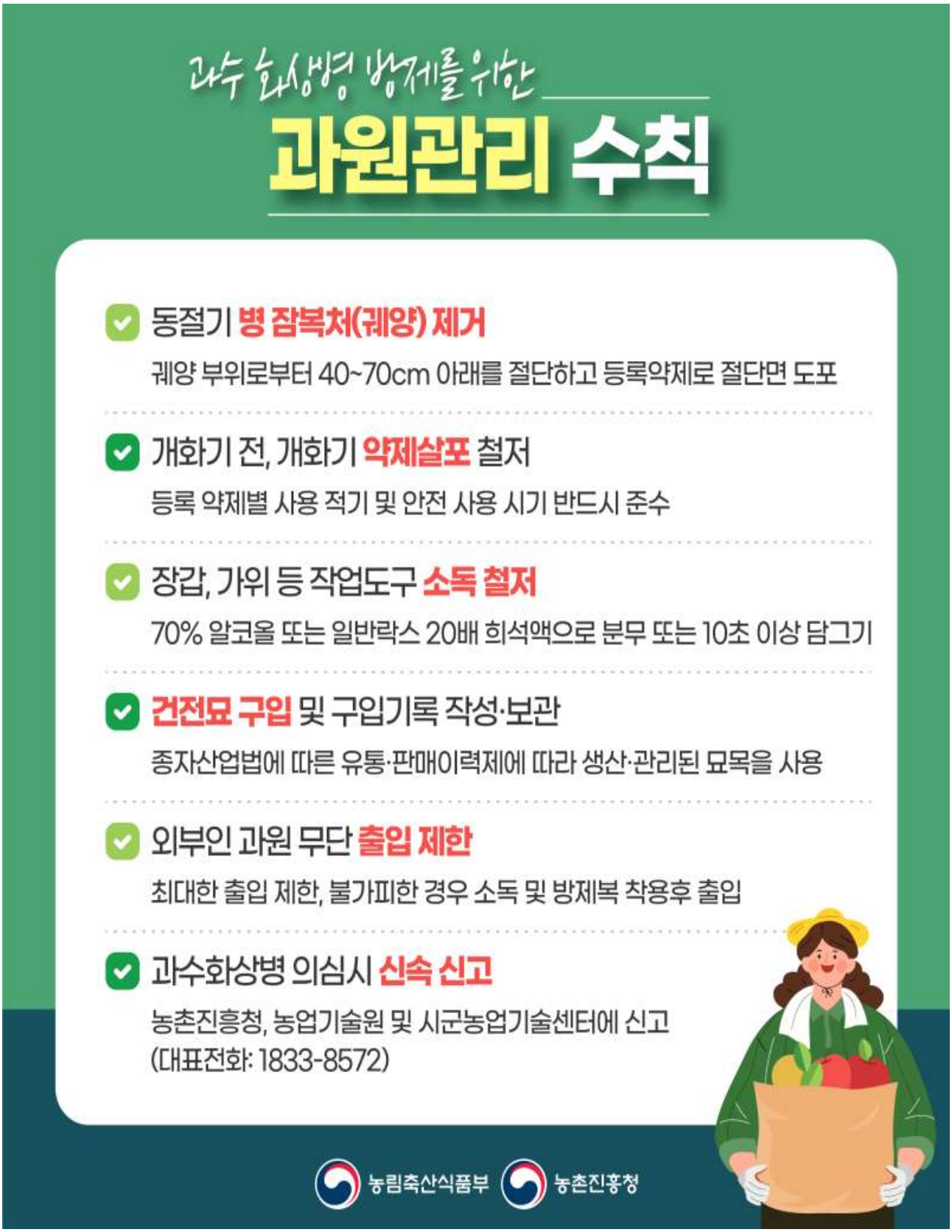

목록보기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지원 해 드립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

목록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044-202-3191/3193)

목록보기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지금 바로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1/332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2024년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수급대상자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 **130만원**, 부부 **208만원**

장 애 수 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4,810원

장 애 수 당 월 6만원(시설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11~22만원(시설 3~9만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가능(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장애인연금은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목록보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6/2718)

○ 2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 현재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이하여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보수 및 일부 보수外 소득에 부과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

○ 이에 가입자간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우리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재산보험료 비중을 축소해왔습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경과

▸1단계('18.7월) :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00 ~ 1,200만원, ▲ 자동차 1,600cc 이상 부과

▸2단계('22.9월) :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000만원, ▲ 자동차 4,000만원 이상 부과

○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전화 안내>

☎ 보건복지부(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목록보기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목록보기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이용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91)

목록보기

2월 이달의 수산물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7)

목록보기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7)

목록보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금지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407)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건전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올(ALL) 바르게

- 어패류 및 관상어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입니다.
- "소중한 반려漁를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원,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만** 구매하셔야 합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❶ 약사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❷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❸ 누구든지 ①과②에 위반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법 : 제44조·제50조 1항···제61조·제61조의2 제85조제1항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유형

관상어의 내·외부 기생충 구제제

금지 표현 백점충(흰반점) 구제제 및 치료제, 외부기생충 예방제, 백점병 방지제, 내부기생충 예방제 등

관상어의 감염병 치료제

금지 표현 솔방울병, 지느러미 꼬리 갈라짐·녹음 질병 예방 및 치료, 백점충(흰반점) 박멸에 강력한 효과,

기타 질병 치료제

금지 표현 관상어의 질병 예방, 박테리아 감염 증상 예방, 종합질병 예방제, 관상어 질병의 강력한 항균충제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 과대 광고

금지 표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 관상어 등 질병예방 및 강력한 개선 효과, 안전한 관상어 예방·치료제, 제품 사용법 표기시 "질병 치료시", "질병 예방시" 문구 사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 확인 및 불법판매신고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활용하세요.

목록보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대상 전면 확대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407)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청렴한 세상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수산용의약품 더욱 안전하게 구입·사용하세요!

주요 내용

수산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수산용의약품 종류가 확대('24.7.19.)되며,
판매처에 따라 구입방법이 달라집니다.

처방대상 수산용의약품 확대에 따른 수산용의약품 구입방법('24. 7. 19.부터)

구입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용의약품 종류	
	현행	시행 후('24.7.19.부터)
수산질병관리원 및 동물병원	항생제, 생물학적제제(백신), 구충제, 마취제, 호르몬제, 대사성제제	항생제, 생물학적제제(백신), 구충제, 마취제, 호르몬제, 대사성제제
동물약국	일부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백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일부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생물학적제제(백신), 구충제 8성분 (트리클로르폰, 비치오놀, 프라지콴텔, 포르말린, 과산화수소, 페반텔, 펜벤다졸, 후마길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1159)
수산방역과 ☎ 051-400-5653

목록보기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원 지원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 **섬 지역에 살면서 택배를 이용할 때, 추가 배송비 때문에 고민되셨나요?**
이제 섬 주민들은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불했다면, 잊지말고 지원금 신청해주세요!! (지자체별 지원금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포함 /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

◀ 신청 요건 ▶

□ 지원 대상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단,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택배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는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가 우체국 택배(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음) 이용 시 유통사·판매자 등 개별 화주가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신청 및 지급 절차 ▶

□ **(지원금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자료(택배비 지불·이용완료 내역 등) 제출

지원금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필요 증빙자료(신청서와 함께 제출)
실제 지불한 추가 배송비 전액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②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택배비 지불 내역**
3천원 (단, 신안군의 경우 보낸 택배에는 2천원 지원)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②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택배비 결제건에 한해 신청 가능, 2024년 12월 20일에 신청 마감

* 신청서는 연중 최초 신청 1회만 제출(단, 인적사항이나 은행계좌 등 신청서 기재 내용 변경시 추가 제출)

□ **(지원 확정 및 지급)**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신청 요건 등을 충족 시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원 대상 섬 지역 여부나 지원금 지급 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군청에 문의해주세요.**

목록보기

참고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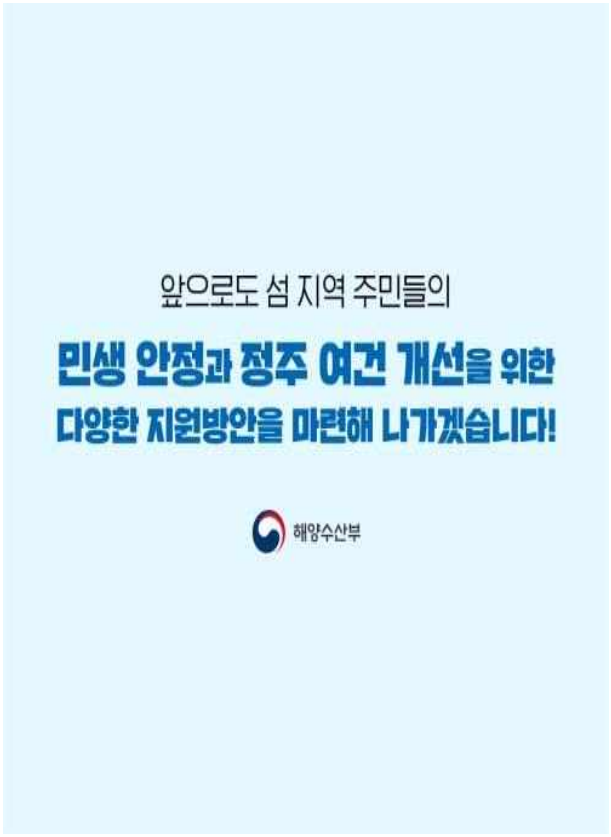

목록보기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5)

□ 추진배경

○ 「항만법」 개정('20)으로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구역이나 방파제 등 파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구역에 대해 출입통제구역 지정 근거* 마련

* 「항만법」 제28조(금지구역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출입통제구역 지정)

**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캠핑과 낚시 등 해양·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

- 낚시, 레저, 관광을 목적으로 야간에 항만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방파제 경계부 및 난간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 최근 3년간 전국 방파제 안전사고 현황 : 189건('21년 88건, '22년 68건, '23년 33건)

□ 개선방안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 운영 매뉴얼 개정 / 2024년1월)

○ 출입통제구역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표지판과 함께 붉은선으로 경계를 표시,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특히, 야간에도 방파제 등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조명시설을 이용, 위험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개선·보강

□ 주요 안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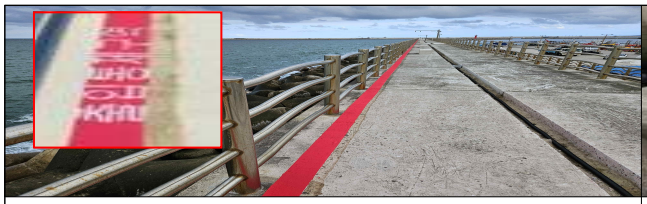

○ 출입통제구역 표시선(의무사항)

○ 위험경고판(선택사항)

○ 로고젝터(선택사항)

○ 표지병(로드아이)(선택사항)

목록보기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 044-200-7075)

목록보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자료제공: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 042-481-2237)

□ 생활시간조사를 소개합니다

○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임

○ **삶의 질이나 웰빙 측정**과 관련하여 「생활시간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양성평등, 노동, 복지,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합니다

○ 365일의 생활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봄·여름·가을·겨울 총 4회 실시**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국 12,750 표본 가구내 만 10세 이상** 가구원 대상

○ 조사 내용은 가구·개인관련 및 시간일지 부문으로 구성됨

* 가구·개인(소득, 삶·여가 만족도 등 26개 문항), 시간일지(2일 동안의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작성)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를 대표하도록 **표본 설계**하여 **가구를 선정**한 후 통계청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방문**함

* 조사원이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해 드리니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는 큰 힘이 됩니다.

○ 조사에 응답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림**

*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 당신에게 묻는 대한민국의 하루,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림

목록보기

□ 2019년 국민의 하루 24시간 중 **수면**시간은 8시간 12분, **일**한 시간은 3시간 13분, **여가시간**은 2시간 26분

□ 2019년 가장 기분 좋은 행동으로 ①식사하기, ②대면 교제, ③실시간 방송시청 순임

목록보기

청소년 도박 근절 및 상담 안내

(자료제공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 02-3704-0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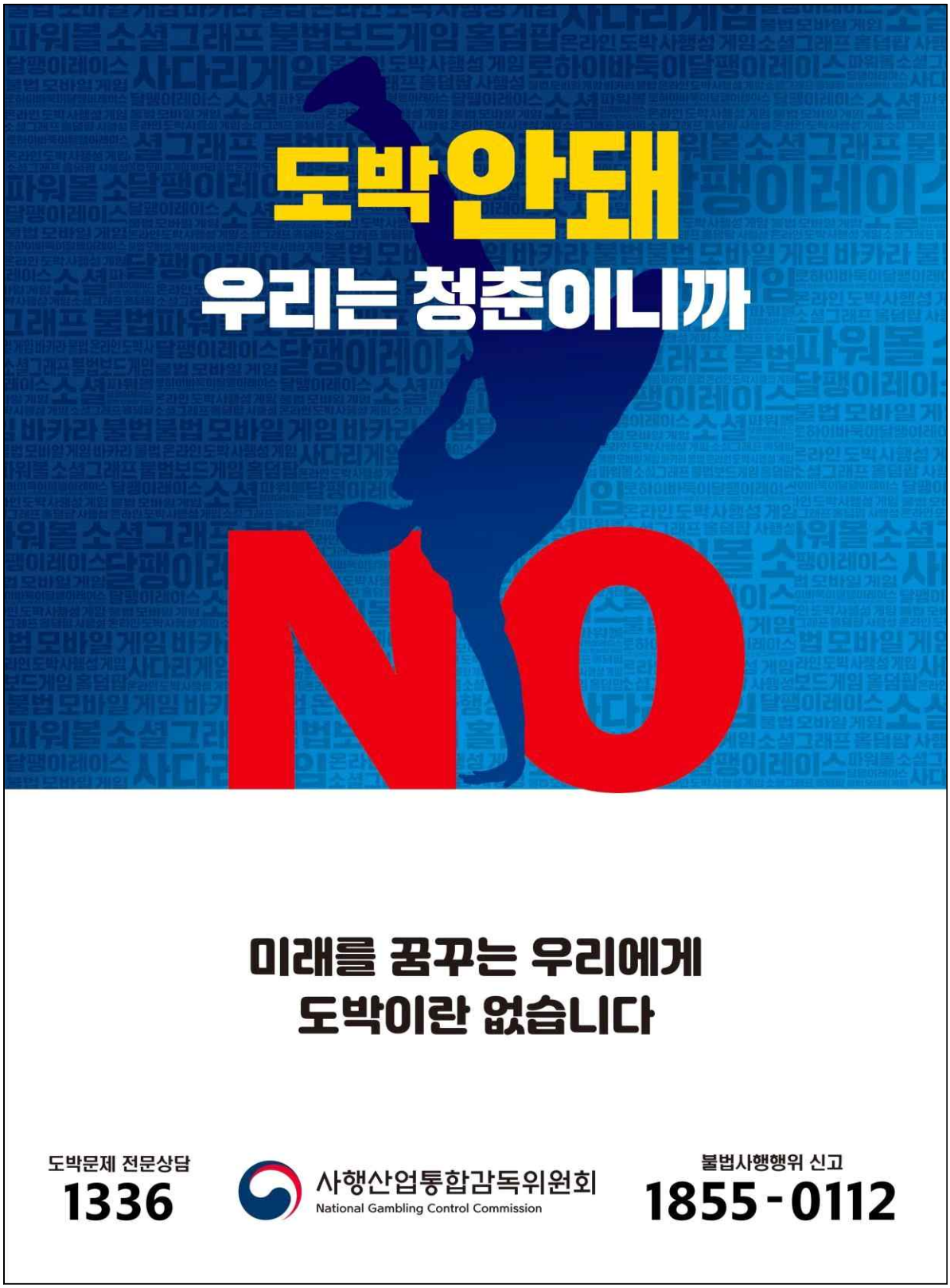

목록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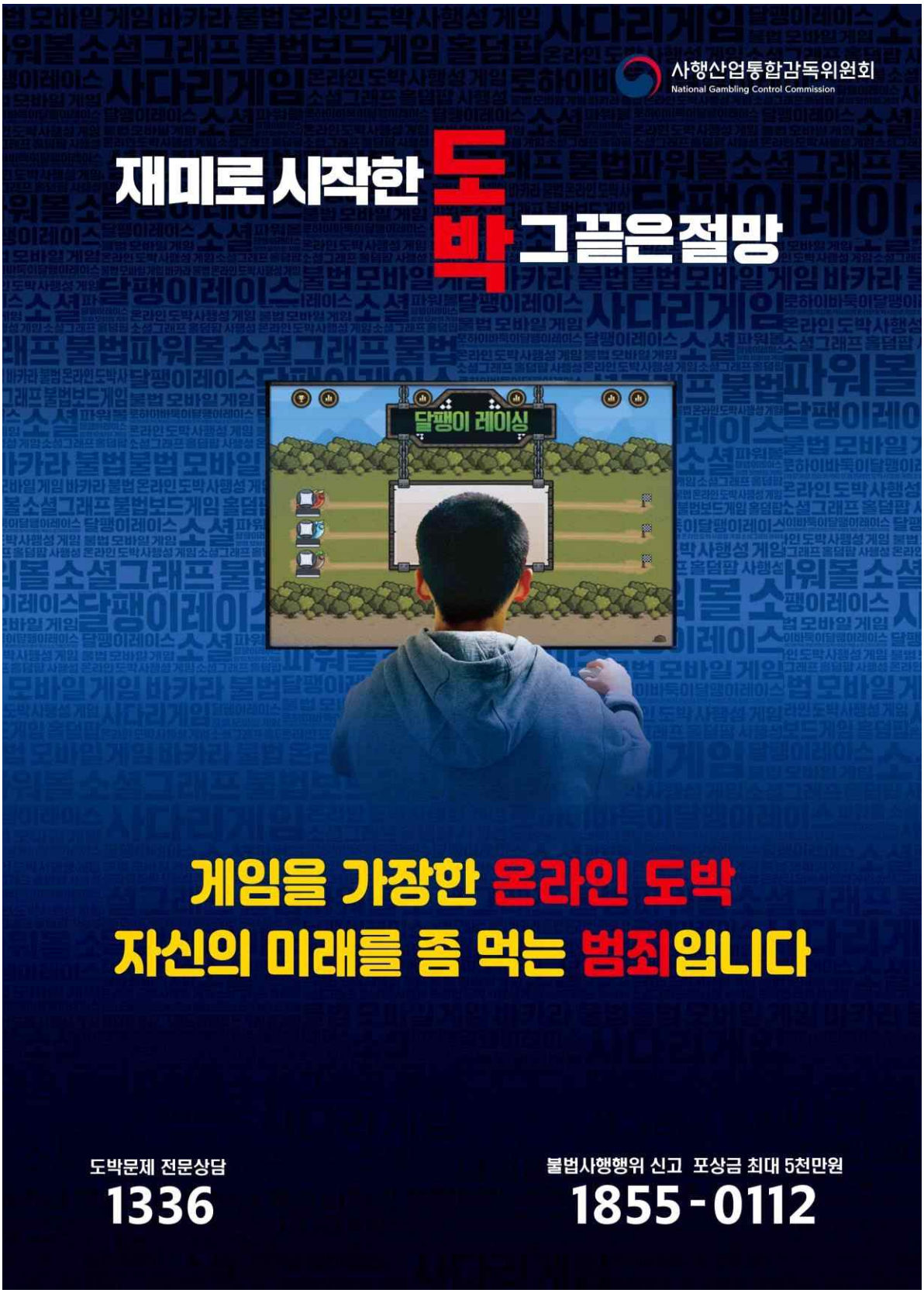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재미로 시작한 도박 그끝은절망
달팽이 레이싱
게임을 가장한 온라인 도박
자신의 미래를 좀 먹는 범죄입니다
도박문제 전문상담
1336
불법사행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5천만원
1855-0112

목록보기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 홍보

(자료제공: 산림청 대변인실 ☎ 042-481-4074)

목록보기

2024년 초 · 중학교 입학생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입학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8~8399)

▶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약한 학령기의 집단생활은 감염병 발생의 근원이 될 수 있어,
▶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빠뜨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기를 권장합니다.

□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할 예정임(3~5월경)

* 「감염병예방법」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확인대상: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구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초등학교	**4~6세 예방접종 4종**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교	**11~12세 예방접종 3종**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아)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입학생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방문 필요

-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후,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방문 전 확인)를 방문합니다.

※ 자세한 접종 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으면,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합니다.

※ 전산등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2024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백신(18종)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비용 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 12세 이하 어린이(2011. 1. 1. 이후 출생자) ※ 2011년생은 2024년까지 국가지원 대상임
○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방문 전 확인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새학기 시작 전 챙기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8~8399)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을 통해 **HPV로 유발되는 암*의 70~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궁경부암과 항문암의 90%, 질암과 구인두암의 70%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

○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권장**합니다.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2024년 기준)

○ 지원 대상: 2006~2012년생(12~17세) 여성청소년
1997~2005년생(18~26세) 저소득층* 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06년생 여성청소년,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2024년 마지막 사업대상자

- 2024.12.31.까지 1~3차 접종 지원하니, 기간 내 접종 필요

○ 지원 백신: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접종 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주의사항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행**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 받기

○ 중증도 이상의 **심한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나,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우는 **접종 시행 가능**

○ **예방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앉아있고**, 어지러울 경우 **누워있기**

○ 예방접종 후 2~3일간 주의 깊게 관찰,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받기

목록보기

참고 HPV 예방접종 포스터 2024

목록보기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043-719-7442)

▶ **간지러움의 대명사 아토피피부염, 긁지 말고 철저한 보습과 피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토피피부염이란?

○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질환

□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증, 그 외 주요 증상으로 발진, 진물, 피부건조증, 긁은 자국(흉터),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가 있음

□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존재

* 유전적요인: 부모 모두 알레르기질환이 없는 경우 자녀발병율 10~15%, 부모 중 한쪽이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자녀발병율 20~30%, 부모 모두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자녀발병율 40%

* 환경적요인: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각종 화학물질 접촉, 공중위생 발달로 면역체계 취약

□ 아토피피부염의 진단기준은 무엇일까요?

○ 가려움증, 만성적 재발 여부, 연령별 증상 발현부위 확인, 가족력·과거력 확인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 **보습 및 피부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 약산성 물비누를 사용하고 때는 밀지 않기, 보습제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목욕 직후 바르기, 피부에 자극 없는 옷 입기, 손톱·발톱은 짧게 깎기)
- **정확히 알레르기로 진단된 식품만을 제한합니다.**
-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 **적절한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합니다.**

목록보기

참고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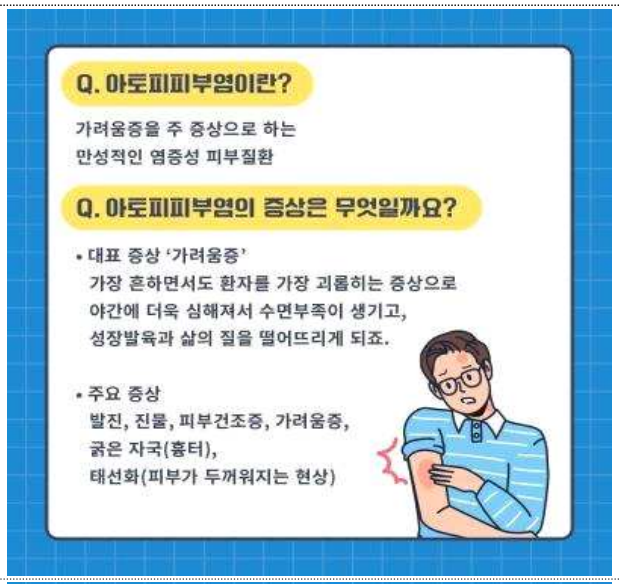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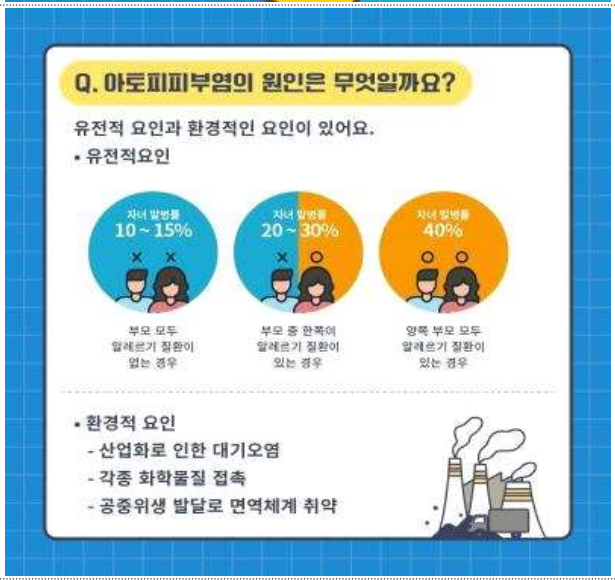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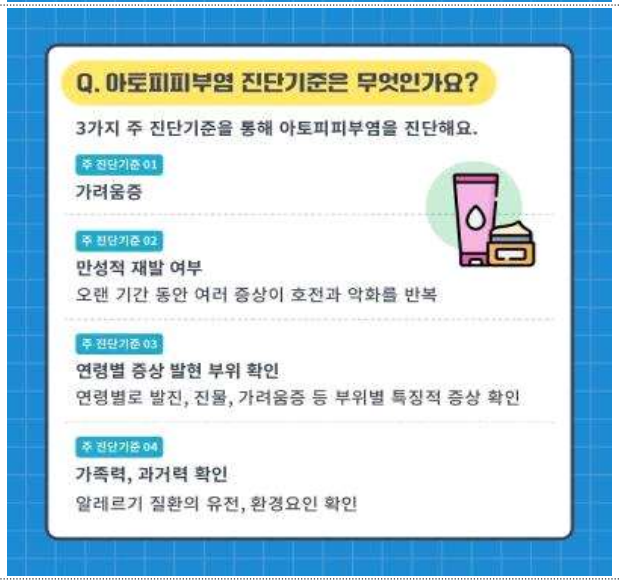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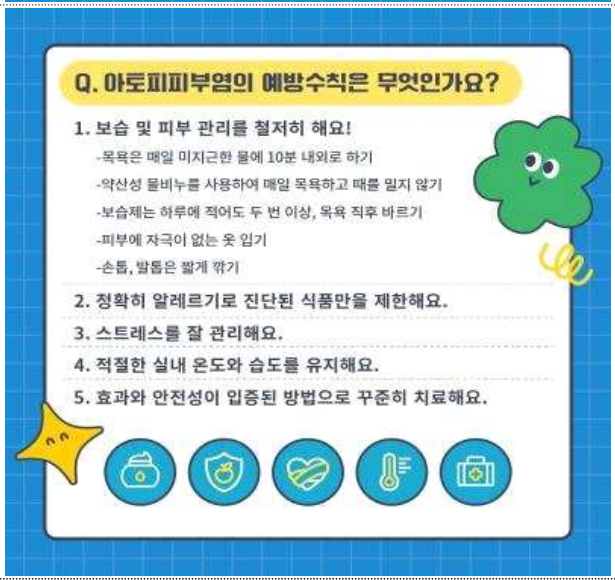

목록보기

해외여행 시 뎅기열 조심하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043-719-7176)

목록보기

설 명절 코로나19 접종 포스터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 ☎ 043-913-2272)

목록보기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 안내문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 ☎ 043-913-2272)

목록보기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기간 1년 연장 의결

- 대통령 · 국회 보고 후, 1월 전체위원회서 의결… 내년 5월 26일까지 조사
- 접수 사건 20,092건 중 53% 처리 완료… 미처리 사건 진실규명 길 열려

(자료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 02-3393-9728)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1차 전체위원회에서 올해 5월 26일 만료되는 조사기간을 **2025년 5월 26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조사기간 연장 의결안'** 을 의결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5조(조사기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현재 신청 사건 20,092건 중 10,567건(53%)을 처리했다. 조사 진행 등 나머지 사건은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와 유족 등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과거사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해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결의안' 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기간 연장안' 을 제출한 바 있다.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 진실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목록보기

조사기간 1년 연장 의결안이 의결된 71차 전체위원회 모습.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기간 1년 연장 의결안을 의결하고 있다.

목록보기

진실화해위원회,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안내

(자료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언론홍보팀 ☎ 02-3393-9728)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로 진실규명한 분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나 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2023년 4월 시작했습니다!**

□ 1기 진실화해위원회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본인이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나 정정은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사람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만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기록 정정만 가능하고, 친자관계나 혼인관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또는 친족***

* 친족 범위: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 **접수기간: 2023. 4. 24.~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심의·의결(90일)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결정통지서'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이 거주지 시·읍·면에 제출

□ **신청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문의: 02-3393-9700**

목록보기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안내

2023. 4. 24. –

Tel 02-3393-970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보기